

1.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의 자문에 응할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
- 긴급한 재해복구의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고 설계변경되는 공사의 경우 새로운 공법이나 구조변경 없이 단순물량이 증감하는 공사도 재차 자문을 받아야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설계자문 대상 공사중 긴급재해복구공사, 하천준설공사, 설계감리를 한 공사, 문화재의 개·보수 및 증축공사, 표준설계도서의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, 공사내용이 단순·반복적인 공사 등은 설계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제2항)
- 설계변경으로 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를 공사비와 관계없이 특별한 공법이나 구조적 변경이 있는 공사에 한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제1항제4호)
- 설계자문위원회 개의 요건을 위촉위원 10인 이상 참석으로 하던 것을 위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조정함.(안 제9조제2항)

□ 검토보고

- 동 조례안은 파주시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
- 긴급한 재해복구의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설계자문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
- 하천 준설공사, 설계감리를 한 공사, 문화재의 개·보수 및 증축공사,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, 공사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공사등은 설계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 것은 사업 추진이 효율성과 경제원칙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
- 설계변경 사업중 총 공사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감되는 경우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공사비와 관계없이 특별한 공법이나 구조적 변경이 있는 공사에 한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보다 합리적인안이라 사료됨.
- 또한, 설계자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위촉위원 10인 이상 참석으로 하던 것을 위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회의를 진행할 최소한의 출석인원수(의사정족수)를 과반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